

## 안전최우선 실천 서약 및 안전보건교육 확인서

본인 근로자 양수호 은 인간존중의 송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“안전최우선” 원칙으로 당 현장의 모든 작업에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.

하나, 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 착용 및 추락위험장소 안전대를 체결하는 기본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으며, 기본안전수칙 위반 시 One-strike out(즉시 퇴출제)이 시행되는 현장임을 숙지하였으며, 동 수칙 위반 시 그 처분을 따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하나, 본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(근로자의 의무)와 제40조(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)를 준수하고,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 조항에 따라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것이며, 그 사실을 시공사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겠습니다.

하나, 본인은 절대 ‘나홀로 작업’을 하지 않겠으며, 작업 장소가 위험한 작업 조건인 경우 위험성을 임의로 판단하지 않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따르겠습니다.

### 1. 핵심 안전보건교육

- 1) 2m이상 추락위험장소에서는 안전난간대/작업발판/추락방호망의 추락방지 조치를 확인하고 안전대를 체결하여야 한다.
- 2) 모든 개구부는 폐합 고정 덮개나 안전난간대로 추락방지 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.
- 3) 건설 장비 반입 점검과 사용 전 점검을 확인하고, 전담 유도자나 전담 관리자를 지정 배치된 상태에서 작업 실시한다.
- 4) 화기/폭발 위험작업 전,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허가제 승인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한다.
- 5) 가설구조물(흙막이/비계/동바리/거푸집/데크플레이트 등)작업과 토사 굽착의 붕괴 위험 구간 작업 시, 해당 근로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, 관리감독자는 일일 자체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한다.
- 6) 관리감독자 등은 상기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,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2. 근로자의 법적의무 사항(산업안전보건법 관련조항)

#### 1) 제6조(근로자의 의무)

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, 사업주 또는 「근로기준법」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,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
#### 2) 제40조(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)

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#### 3) 제52조(근로자의 작업중지)

-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(이하 “관리감독자 등”이라 한다)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③ 관리감독자 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### 3. 근로자 서약

\* 현장명 :

소속회사	공종 / 담당업무	성명 / 서명	교육일 / 서약일
한국자동화		양수호	2.10